

2013. 4. 24(수) 실시 재·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	관계법조
		인구수 등의 통보	인구의 기준일 후 15일(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	법§4, §60의2① 규§21②
		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	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	규§51①② 규§26의2③
12. 12. 25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국회의원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	선거일 전 12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)	법§60의2①
13. 1. 11부터	금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)	법§60의2①
1. 24까지	목	각급선거위 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라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)까지	법§60②
2. 10부터	일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군의원 및 군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)	법§60의2①
2. 23부터 4. 24까지	토 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	법§86②
		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	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	법§53②
4. 4부터 4. 5까지	목 금	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오전9시 ~ 오후6시까지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	법§49, 규§20
4. 5부터 4. 9까지	금 화	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	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	법§37, 규§10 법§38, 규§11
4. 10까지	수	선거벽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	법§64② 규§29④
4. 11	목	선거기간개시일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§33③
4. 12까지	금	선거공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	법§65⑤ 규§30④
		선거벽보 첩부	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	법§64② 규§29②⑤, §123
4. 14까지	일	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	선거일전 10일까지	법§147⑧
4. 15까지	월	부재자투표용지(거소용) 발송 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	선거일전 9일까지	법§65⑤, 154①⑤ 규§77
4. 15에	월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9일에	법§44①
4. 17까지	수	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	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§65⑤, 153①② 규§76
4. 19부터 4. 20까지	금 토	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(오전6시 ~ 오후4시까지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§158의3④
4. 24	수	투 표 (오전6시 ~ 오후8시까지)	선 거 일	법 제10장
		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		법 제11장
5. 6까지	월	선거비용 보전청구	선거일후 10일까지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	법§122의2③ 민법§161, 규§51의3①
5. 24까지	금	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	선거일후 30일 이내	법§57①, 규§25①
		선거비용 수입·지출보고서 제출	선거일후 30일까지	정금법§40①
6. 23이내	일	선거비용 보전	선거일후 60일 이내	법§122의2① 규§51의3②

※ 실시대상선거는 2012. 11. 20.부터 2013. 3. 31.까지의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임.

2013. 4. 24(수) 실시 재 · 보궐선거 세부일정

※ 「공직선거법」은 “법”으로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은 “규”로, 「정치자금법」은 “정금법”으로, 「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」은 “정금규”로,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은 “공병법”으로, 「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」은 “공병규”로 각각 약기함.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상 시	기부행위제한	누구든지	상 시	법§112 내지 §117
	인구수 등의 통보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	법§4, §60의2① 규§2①②
	정당·후보자가 설립·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	정당·후보자가 설치·운영하는 기관·단체 등	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	법§89②
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	누구든지		법§90①
	탈법방법에 의한 문서·도화의 배부·게시등 금지			법§93①
12. 11. 12(월)부터	전과기록[금고 이상의 형(법 §18①3.에 규정된 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)의 범죄경력]조회 <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>	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, 정당	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	법§49⑩ 규§20⑦
	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·통지 <정당, 정당선거사무소, 예비후보자, 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0일(그 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	법§60의3, §122 규§26의2③ §51①②
12. 12. 25(화)까지	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직	지방자치 단체의 장	선거일전 120일까지	법§53⑤
12. 12. 25(화)부터 4. 24(수)까지	시·도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·운영	시·도위원회	선거일전 12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에는 확정된 후 5일)부터 선거일까지	법§10의3② 규§2의3
12. 12. 25(화)부터 5. 24(금)까지	정당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 신고 [지역구국회의원, 시·도지사선거] <관할위원회에>	중앙당 또는 시·도당의 대표자	사무소를 설치·변경하는 때 지체없이 [선거일전 120일부터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에는 확정된 때부터) 선거일후 30일까지]	법§61의2①③ 규§27의2①
2. 10(일)부터 5. 24(금)까지	정당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 신고 [지방의원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] <관할위원회에>		사무소를 설치·변경하는 때 지체없이 [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]	
	정당·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 <중앙위원회에>	중앙당	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	법§137③ 규§60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12. 12. 25(화)부터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지역구국회의원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		선거일전 12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
1. 11(금)부터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의원선거, 구·시의 의원 및 장 선거]	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	선거기간개시일전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60의2①
2. 10(일)부터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군의원 및 군수 선거]		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
	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<선거구위원회에>			
	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<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	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	법§60의2②
	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(외국학력의 경우 한글 번역문 첨부) 제출<선거구위원회에>			
	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<선거구위원회에>			
	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	선거구위원회	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	규§24②
	피선거권 조사<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, 등록 기준지 관할 구·시·읍·면의 장에게>	선거구위원회	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후	법§60의2③ 규§26②
	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지체없이	법§61① §63①④ 규§28①
	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 선임·해임 및 교체신고<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, 선거사무장	지체없이	법§62③④ §63①④ 규§28①
	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명함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	법§60의3② 규§26의2①
	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<관할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	규§21
	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·겸임·교체신고<관할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	정금법§34①③ §35① 정금규§32①②
	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<관할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회계책임자 선임·신고한 때	정금법§34④ 정금규§34①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(수회발송하는 경우 최초 신고시 일괄신고 가능)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발송일전 2일까지	법§60의3①⑥ 규§26의2⑤
	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 (수회 발송한 경우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일괄 제출 가능)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	법§60의3①⑥ 규§26의2⑥
	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[지방자치단체장선거]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발간즉시	법§60의4①③
1. 24(목)까지	각급선거관리 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,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<당해 기관에>	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	선거일전 90일(그 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까지	법§60②
1. 24(목)부터 4. 24(수)까지	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개최금지	누구든지	선거일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)	법§103⑤
	의정활동 보고 금지(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·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)	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	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	법§111①
2. 23(토)부터 4. 24(수)까지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	지방자치단체의 장	선거일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)	법§86②
2. 23(토)부터 5. 4(토)까지	선거부정감시단 인원 추가 구성·운영	중앙위원회 시·도위원회 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)	법§10의2② 규§2의2②
	투표관리관 위촉·운영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)	법§146의2 규§67①
	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·토론회의 방송일시·진행방법 등 통보<관할선거구위원회에> [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함]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대담·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(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)	법§82① 규§45④
2. 24(일)이전부터	후보자 거주요건 <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> [지방선거에 한함]	입후보예정자	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(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)이 되어 있는 자	법§16③
3. 22(금)까지	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·주소 조사 통보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	법§65⑥ 규§30⑤
3. 25(월)까지	선거사무대행 읍·면·동위원회 등 결정·공고·통지 <읍·면·동위원회에>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3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)까지	법§13③ 규§33④
3. 26(화)까지	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부재자신고서 발송 <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	법§38③ 규§11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	
3. 30(토)까지	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<구·시·군의 장에게>	예비후보자	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	법§60의3④	
3. 30(토)부터 4. 5(금)까지	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·교부 <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> [검인·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]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	법§48②④ 규§19	
4. 1(월)까지	선거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 작성·제출수량 등 공고 [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]	선거구위원회	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	법§64③, §65⑪ §66⑧	
4. 3(수)까지	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·공고[지방의원선거는 제외]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	법§71⑥	
4. 4(목)까지	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	법§31③ 규§7	
	선거인명부(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)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임면한 때에 지체없이	법§39② 규§12①	
	투표용지 작성방법 결정·통지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 및 통보<정당·후보자에게> [동시선거에 한함]	선거구위원회 구·시·군위원회	투표용지 작성방법을 정한 때	법§211① 규§126①②	
	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<당해 기관에>	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	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	법§53②	
4. 4(목)부터 4. 5(금)까지	후보자등록 신청<선거구위원회에> (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)	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	법§49 규§20	
	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<선거구위원회에>	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	후보자등록신청시	법§49④⑪⑫	
	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<선거구위원회에>				
	최근 5년간 후보자,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·재산세·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<선거구위원회에>				
	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<선거구위원회에>				
	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(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) 제출 <선거구위원회에>				
	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			규§21
	기탁금 납부 <선거구위원회에>				법§49④⑧, §56① 규§24①
	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<후보자에게> [지방의원선거는 제외]			선거구위원회	법§71⑥
	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	선거구위원회	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	규§24②	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·변경신고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	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(변경시유발생후 지체없이)	정금법§34①③ §35① 정금규§32①②
	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선임·변경신고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연락소장	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(변경시유발생후 지체없이)	정금법§34①③ §35① 정금규§32①②
	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연락소장	회계책임자를 선임, 신고한 때	정금법§34④ 정금규§34①②
	피선거권 조사 <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, 등록기준지 관할 구·시·읍·면의 장에게>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	법§49⑧⑩ 규§20③
	정당·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마감후	법§150③④⑤⑥
	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·송부 <구·시·군위원회에>	선거구위원회	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	법§150 규§71①②
	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·소재지 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	법§152②
	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·보고<상급 위원회에>·통지<하급위원회에>	선거구위원회	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	법§188②③⑤ §190②③ §191③
	후보자등록·사퇴·사망·등록무효에 관한 공고·보고 <상급위원회에>, 통지<하급위원회에>·통보<한국 방송공사에>	선거구위원회	지체없이	법§55 규§23의2① §38⑦
	후보자등록무효 통지 <후보자, 추천정당에>	선거구위원회		법§52④
	선거사무소<선거구위원회에>, 선거연락소<구·시·군 위원회에>설치변경신고	후보자		법§63①④, §205 규§28①, §122
	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의 선임·해임 및 교체신고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	법§63①④, §205 규§28①, §122
	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임·교체신고시	규§21
	정강·정책홍보물 2부 제출(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) <중앙위원회에>	중앙당	배부전까지	법§138④ 규§61③
	정책공약집 2권 제출(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) <관할위원회에>	판매할 당부	발간즉시	법§138조의2③ 규§61③
	정당기관지 2부 제출(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) <중앙위원회에>	중앙당	발행즉시	법§139③ 규§61③
	후보자 사퇴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후보자	사퇴하고자 하는 때	법§54 규§23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<선거구위원회에>	정 당	사유발생시	규§22
	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<구·시·군위원회에>	후 보 자	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	법§67 규§32②
	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 [지방의원선거는 제외]	후 보 자	방송일전 3일까지	법§71⑩ 규§36⑦
	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·일시·소요시간 등의 통보<선거구위원회에>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방송일전 2일까지	법§72③ 규§37②
	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·이용일시·시간대·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<후보자에게>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	법§72① 규§37①
	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<관할위원회에>	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	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	법§79⑥ 규§43②
	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<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>	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	개최일전 2일까지	법§81③ 규§44①④
	선거운동용 자동차·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<관할위원회에>	후 보 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	법§91④ 규§48
	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	각급위원회	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	법§271② 규§145①
	불법인쇄물 공고 <관할 구·시·군위원회 게시판에>	각급위원회	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	법§271② 규§145②
	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<당해 우체국장에게>	각급위원회 (읍면동위원회제외)	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	법§272①
	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<발송인>·공고 <발송인 주소 미기재시>	당 해 우체국장	발송을 중지한 때	법§272②
4. 5(금)까지	경력방송원고 제출 <선거구위원회에> [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]	후 보 자	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	법§73⑤ 규§38②
4. 5(금)부터 4. 9(화)까지	선거인명부 작성	구·시·군의 장		법§37 규§10, §120①
	부재자신고 <구·시·군의 장에게>	부재자신고 대상자	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	법§158의3② 규§11①② §120②
	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	구·시·군의 장		법§38③④⑤⑥ 규§11③④⑤⑦⑧⑨
4. 6(토)까지	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 통보 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의 다음날까지	규§2④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4. 7(일)까지	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	구·시·군의 장	열람개시일전 3일까지	법§40③, §44②③ 규§13③, §16⑤
4. 8(월)까지	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	예비후보자	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	법§60의3①
	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 (수회발송시 최종발송일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)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발송일부터 2일이내에	법§60의3①⑥ 규§26의2⑥
4. 8(월)까지	경력방송원고 송부 <한국방송공사(해당 지역방송국)에> [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]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	법§73①⑤ 규§38②④
	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<선거구위원회, 시·도 또는 중앙위원회에>	한국방송공사 (지역방송국)	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	법§73① 규§38⑥
	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<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	법§74① 규§39①
	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<선거구위원회에>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방송일전 2일까지	법§74② 규§39②
4. 9(화)까지	선거인명부(부재자신고인명부)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	법§46⑤ 규§18④
	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작성후 지체없이	규§10⑥
	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등본(전산자료 복사본 포함) 송부 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	법§37④ §38⑥
4. 10(수)에	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	구·시·군의 장	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	법§44①
	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	규§16①
	부재자신고서,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	규§16②
	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	규§14④, §87①
4. 10(수)부터 4. 12(금)까지	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<구·시·군의 장에게>	선거권자는 누구든지	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	법§40①②, §41① 규§13
	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·통지 <신청인, 관계인, 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1②
	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<구·시·군위원회에>	이의신청인 관계인	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2①
	불복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·통지 <신청인, 관계인, 구·시·군의 장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2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4. 10(수)까지	선거벽보 제출 <구·시·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>	후보자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	법§64② 규§29④
4. 11(목)	선거기간 개시일	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§33③
4. 11(목)까지	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<구·시·군의 장에게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기간개시일까지	법§46②③⑤ 규§18③
4. 11(목)부터 4. 24(수)까지	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<선거구위원회에>	누구든지	선거기간중	법§49⑪ 규§20⑤
4. 11(목)부터 4. 23(화)까지	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 또는 합동 방송연설회 개최 [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]	선거방송 토론위원회	선거운동기간중	법§82의2②③
4. 12(금)까지	선거공보 제출 <구·시·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>	후보자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	법§65⑤ 규§30④
	선거벽보 첩부	구·시·군위원회	제출마감일 후 2일(섬 및 산간오지는 3일)까지	법§64② 규§29②⑤, §123
4. 12(금)까지	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(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)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<해당 상급위원회에>	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, 후보자	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	법§64⑥, §65⑪ 규§29⑦, §30⑪
	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(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)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	상급위원회, 선거구위원회	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	법§64⑥⑦, §65⑪ 규§29⑧, §30⑪
4. 12(금)까지	법 제38조제4항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신고 <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>	장애인거주시설의 장	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	법§149의2①
4. 13(토)까지	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등 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	법§149의2② 규§70의2②
	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<30명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에게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공고일 후 2일 이내	법§149의2④
4. 13(토)부터 4. 14(일)까지	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<구·시·군위원회에>	당해선거권자, 구·시·군의 장	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	법§43① 규§15
	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<구·시·군의 장, 신청인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3②
4. 14(일)까지	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	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일전 10일까지	법§147⑧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4. 15(월)까지	무투표 통지 <부재자신고인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9일까지	법 §188②, §190② §191③ 규 §109①
	부재자투표용지(거소용) 발송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<부재자신고인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	법 §65⑤, §154①⑤ §212 규 §77
	통합선거인명부 사용 부재자투표소의 명칭·소재지 및 설치·운영기간 공고·통지<선거사무장· 선거연락소장에게>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	구·시·군위원회		법 §148③ 규 §68⑤
우편투표함 비치	구·시·군위원회	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	규 §80	
	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(거소용)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<당해 선거인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 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	법 §154② 규 §78②
장애인가주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·운영일시 및 장소신고<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>	기표소 설치 장애인가주 시설의 장	기표소 설치일전 2일까지	법 §149의2⑤	
	장애인가주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·운영일시 및 장소공고	신고를 받은 구·시·군위원회	신고를 받은 때	법 §149의2⑤
4. 15(월)에	선거인명부 확정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일전 9일에	법 §44①
선거인명부 송부 <읍·면·동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	규 §16③	
	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확정후 지체없이	규 §16①
	통합선거인명부 작성	중앙위원회	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	법 §158의3① 규 §87①
	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	규 §14③
4. 16(화)부터 4. 20(토)까지	통합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<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확정후부터 부재자투표기간 만료일 까지(발견한 때마다)	규 §87①
	통합선거인명부에 통보 사실 기재	구·시·군위원회		
4. 16(화)까지	통합선거인명부 사용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 참관인 선정·신고<구·시·군위원회에>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일전 8일까지	법 §162②, §213② 규 §88①
	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(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,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)	구·시·군위원회		법 §162③
4. 16(화)부터 4. 24(수)까지	구·시·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,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	법 §44②
4. 17(수)까지	투표용지 모형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7일까지	법 §152① 규 §75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4. 17(수)까지	투표안내문(접자형 포함) 발송(선거공보 동봉) <매세대에>	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§65⑤, §153①② §211 규§76, §127
4. 18(목)까지	통합선거인명부 사용 부재자투표소 설비 (읍·면·동마다)	투표관리관	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 까지	규§68④, §87①
4. 19(금)까지	개표소 공고 [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· 통지(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에게)]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5일까지	법§173①② 규§95②
4. 19(금)부터 4. 20(토)까지	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[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]	투표관리관	선거일전 5일부터 2 일간	법§155② §158의3④
	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	투표관리관	매일의 부재자투표 마감 후	법§158②
4. 21(일)까지	투표사무원 위촉·공고	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일전 3일까지	법§147⑨
	개표사무원 위촉·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174①②
4. 21(일)에	부재자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	읍·면·동위원회	부재자투표기간만료 일의 다음날에	규§87③④
4. 22(월)까지	투표참관인 선정·신고 <읍·면·동위원회에>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일전 2일까지	법§161②, §213① 규§88①②
4. 23(화)까지	선거인명부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<구·시·군 및 읍·면·동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일 전일까지	규§14④, §87①
	부재자투표용지(거소용)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(거소용)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 작성·통지<읍·면·동위원회에→투표관리관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 읍·면·동위원회		법§154③ 규§78③
	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<읍·면·동위원회에> 투표용지·투표함·선거인명부 인계<투표관리관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 읍·면·동위원회		법§151① 규§16④
	투표소의 설비	읍·면·동위원회, 투표관리관		법§147①내지⑥ 규§67조의2, §128
	개표소의 설비	구·시·군위원회		규§95
	투표참관인 선정(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· 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)	읍·면·동위원회		법§161③ 규§88①
	개표참관인 선정·신고 <구·시·군위원회에>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	법§181②, 규§102①③
	개표참관인 선정(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,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)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181③ 규§102③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투표참관인 교체신고 <읍·면·동위원회에, 선거일 투표소에서>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신고후 언제든지	법§161⑤ 규§88①
	개표참관인 교체신고 <구·시·군위원회에, 개표일 개표소에서>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	법§181② 규§102③
	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·보관·관리시 입회	정당추천위원	투표용지수령·보관 및 관리시	법§151⑤
선거일 [4. 24(수)]	투 표 (투표진행, 투표록작성 등)	투표관리관	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	법10장
	부재자투표(거소용) 접수	구·시·군위원회	오후 8시까지	법§155⑤ 규§96
	우편투표함 개표장 이송	구·시·군위원회	오후 8시후에	법§176② 규§97
	투표함 등 송부 <개표소에>	투표관리관	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	법§170①② 규§94
	개 표 (개표진행, 개표결과공표, 마감상황 보고, 개표록작성 등)	구·시·군위원회	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	법11장
	개표록 송부 <선거구위원회에>	구·시·군위원회	개표록 작성후	법§185① 규§106
	후보자별 득표수 계산·공표 및 선거록 작성,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<상급위원회에>	선거구위원회	개표록을 송부받은 때	법§185② 규§106①
	당선인 결정·공고·통지, 당선증 교부	선거구위원회	지체없이	법§188,§190, §191 규§108
4. 24(수)까지	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	선거사무 관계자등	선거일까지	법§60②
5. 4(토)까지	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·통지 <당해 당선인, 소속정당에>	선거구위원회	선거일후 10일 이내	법§193① 규§111
5. 6(월)까지	선거비용 보전청구 <선거구위원회에>	후 보 자	선거일후 10일까지 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)	규§51의3① 민법§161
5. 8(수)까지	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<시·도위원회, 중앙위원회에> [지방선거]	선거인, 정당, 후보자	선거일부터 14일 이내	법§219①
	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<시·도위원회, 중앙위원회에> [지방선거]	정당, 후보자	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	법§219②
	선거의 효력 및 당선인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· 공고 및 결정서 송달<소청인, 피소청인, 참가인에게> [지방선거]	중앙위원회, 시·도위원회	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	법§220①②③ 규§141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선거소송, 당선소송 제기 [지방선거]	소청인, 당선인, 피소청인	·소청결정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·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(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 하지 아니한 때)	법§222②, §223②
5. 9(목)까지	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<당해 기탁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선거일후 15일까지	법§57② 규§25③
	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<선거구위원회에>	당해 기탁자	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	법§57②
	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	선거구위원회	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	법§57③ 규§25③
	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<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>	선거구위원회	당선인 결정후 15일 이내	법§49⑨
5. 14(화)까지	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	회계책임자	선거일후 20일까지	정금법§40①
5. 24(금)까지	선거소송 제기(대법원에) [국회의원선거]	선거인, 정당, 후보자	선거일후 30일 이내	법§222①
	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<기탁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	법§57① 규§25①
	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<기탁자에게>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(중앙위원회)의 징수관에게 납입	선거구위원회		법§57② 규§25②
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<당해위원회에>	회계책임자		정금법§40① 정금규§40①
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<선거구위원회에>	정당·후보자	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	규§51의3①	
당선소송 제기(대법원에) [국회의원선거]	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<병무청장(원본), 소속기관의 장(사본)에게>	정당, 후보자	당선인 결정후 30일 이내	법§223①
	선거구위원회	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	공병법§9④ 공병규§6	
5. 31(금)이내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·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	관할위원회	정치자금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	정금법§42① 정금규§41①
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, 보고, 자료 제출요구 등<정당·후보자·예비후보자·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>	각급위원회 (읍·면·동위원회 제외) 위원직원	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	정금법§43① 정금규§43①	
	관할위원회	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	정금법§42②	
	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(선거 비용에 한함) 공개<누구에게나>	관할위원회	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	정금법§42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<당해 위원회에>	사본교부신청인	열람기간중(경비 납부는 교부신청과 동시에)	정금법§42② 정금규§41③
	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<관할위원회에>	이의있는 자	열람기간중	정금법§42⑥ 정금규§42①
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제출 통지 <회계책임자, 관계인에게>	당해위원회	이의신청을 받은 때	정금법§42⑧ 정금규§42③
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<당해 위원회에>	회계책임자, 관계인	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	정금법§42⑧ 정금규§42③
	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·통지<이의신청인에게>	당해위원회	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	정금법§42⑧
6. 23(일)이내	선거비용 보전 <당해 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선거일후 60일 이내	법§122의2① §135의2 규§51의3②, §59의2
	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<당해 정당·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	법§135의2⑤ 규§59의2
	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<선거구위원회에>	정당·후보자	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	법§135의2⑤
	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	선거구위원회	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	법§135의2⑥
	보전유예비용의 납입 <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>	선거구위원회	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	법§135의2④ 규§59의2③④
	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<당해 정당·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	규§59의2③
	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(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)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<당해 정당·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없이	법§265의2②
	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(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)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당해 정당·후보자	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	법§265의2②
	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 <당해 정당·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>	선거구위원회	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	법§265의2③
10. 24(목)까지	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, 통·리·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	선거사무 관계자등	선거일후 6월 이내	법§60②